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18-91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19. 3.

제안자: 행정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‘사회적경제 기업’의 모호한 용어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, 사회적경제 조직에의 재정지원에 대한 행정청의 지도·감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3조제3호마목 중 “공유경제, 공정무역 등”을 삭제하고, “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 조직”을 추가
- 나. 제10조제2항 중 “필요할 때에는”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회수할 수 있다”를 “회수하여야 한다”로 수정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수정안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 
제3조제3호마목 중 “그 밖에 공유경제, 공정무역 등”을 “그 밖에”로, “비영리  
민간단체 등”을 “비영리민간단체,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 조직”  
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, 필요할 때에는”을 “지도·감독하여야  
하며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회수할 수 있다”를 “회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원           안	수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“사회적경제기업”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라. (생 략)</p> <p>마. <u>그 밖에 공유경제, 공정무역 등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</u></p> <p>4. ~ 7. (생 략)</p> <p>제10조(재정지원) ① (생 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<u>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,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<u>그 밖에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비영리민간단체,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 조직</u>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재정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, 그 업무에 -----</u> ----- -----.</p>

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 회수하여야 한다.